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3가단11120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A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8. 29.

판 결 선 고 2023. 9.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21. 9. 24. 접수 제201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채무자 A(이하 ‘채무자’라 한다)은 C은행으로부터 2014. 3. 19. 23,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원고 보조참가인과 신용보증약정을 하였으나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 보조참가인이 C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차전216호로 구상금 청구를 하여, 2022. 1. 11. ‘채무자는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19,741,000원 및 그 중 19,740,989원에 대하여는 2021. 11. 30.부터 2022. 1. 17.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22. 1. 17.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2022. 2. 4. 확정되었다.

나. 채무자는 2021. 9.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23.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21. 9. 24.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 보조참가인은 2022. 6. 16.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자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1개월 지나 2021.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 2021개회23043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22. 9. 1.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후 이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2) 파산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 개별적 ·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 보호와 파산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여기에서 행위의 상당성 유무는 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 · 의도와 동기 등 채무자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모하거나 동인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직전 이미 채무초과에 이른 상태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한 지 1개월 만에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채무자가 2021. 10. 14.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상 채권합계액이 752,294,154원(채권번호 47번)에 이르는데도 피고에게 담보를 제공해 준 점, 피고는 채무자의 D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D이 여전히 채권자로 기재된 점, 채무자는 피고로부터 개인회생신청 이후에도 돈을 송금받았으나 그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으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파산재단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임과 동시에 특정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며,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제391조 제1호에 따른 부인의 대상이 되고, 이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피고는,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사실을 모르고 D로부터 채무자를 소개받았고 채무자가 학원 운영이 어렵다고 하여 젊은 사람을 도와준다는 선의에서 금전을 대여하게 되었으며, 채무자가 D에 대하여 부담하던 50,000,000원의 채무를 2021. 9. 23. 대위변제 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이후 2021. 10. 14.부터 2022. 4. 18.까지 사이에 채무자에게 48,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 2)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경

목 록

1. 강원도 홍천군	진 873㎡
2. 강원도 홍천군	진 99㎡
3. 강원도 홍천군	대 403㎡
4. 강원도 홍천군	진 1650㎡
5. 강원도 홍천군	대 403㎡
6. 강원도 홍천군	답 869㎡
7. 강원도 홍천군	임야 71306㎡ 1/2 지분
8. 강원도 홍천군	임야 2777㎡ 1/2 지분

